[별지 제1호] <개정 2016. 12. 6.>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2023 . 06 .23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끝.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손준혁 주임
전화번호 : 02-6949-0248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1]	겸직사항[2]	자격요건 확인결과[3]
이사 (상임, 비등기)	김희현	780911	2023.06.23	2024.03.31	이사	삼일회계 법인	해당사항 없음	자격충족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마지막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1]	겸직사항[2]	비 고
대표이사 (상임,등기)	정민철 (鄭旻哲)	770118	2021.7.25 (2018.7.25. /3회)	2023.7.25	㈜화인파트너스	해당사항없음	
이사 (상임,등기)	배재원 (裵宰源)	630218	2022.03.29 (2019.10.31 /2회)	2024.03.29	조은저축은행 ㈜화인파트너스 동남리스금융 동남은행,제일은행	해당사항없음	
이사 (비상임,등기)	오동환 (吳東煥)	550111	2022.03.29	2024.03.29	한라대학교	해당사항없음	
감사 (비상임,등기)	이성로 (李成魯)	481220	2022.03.29 (2020.03.26 /2회)	2024.03.29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해당사항없음	
전무이사 (상임,비등기)	김태훈 (金泰勳)	710511	2022.04.01 (2019.11.25 /2회)	2024.03.31	삼정회계법인	해당사항없음	
상무이사 (상임,비등기)	박혜은 (朴惠銀)	770629	2022.04.01 (2019.10.28 /2회)	2024.03.31	베스타스자산운용, 삼정KPMG AAS	해당사항없음	
상무이사 (상임,비등기)	윤병삼 (尹炳三)	740721	2022.04.01 (2019.11.26 /2회)	2024.03.31	STX마린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이사 (상임, 비등기)	김희현 (金希炫)	780911	2023.06.23	2024.03.31	삼일회계법인	해당사항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희현	직 위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희현	직 위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희현	직 위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종 합 의 견

2023 년 6 월 23 일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임 원 김희현 (인)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민철 (인)